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71
----------	-----

2021. 10. 22.(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최경천 의원

나. 발의일자: 2021년 10월 1일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2021년 10월 13일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경천 의원)

가.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 지원사업 (안 제5조)
-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시범학교 운영 (안 제7조)
- 교원 연수 등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
- 시행규칙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 개발 및 컨설팅과 교원 연수 등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 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

- 안 제7조에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협력체계를 구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 론 요 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교육과정, 교육 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5.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6.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7. 4차 산업혁명 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 방안
8.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9.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 개발 및 수업 지원
2. 4차 산업혁명 교육 컨설팅 지원
3. 4차 산업혁명 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
4. 교원 대상 4차 산업혁명 수업 역량강화 연수
5.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제5조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미래인재과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융합인재부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

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교사, 교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의 전문가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시범학교 운영)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교원의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11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5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 1. 12.>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 및 벤처 등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 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으로 데이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全)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및 역기능 대응에 관한 사항
8. 신산업·신서비스의 진입을 제약하는 규제의 발굴·개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9.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10.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가 성장하기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협력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
12.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국민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13.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1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5. 데이터 생산·구축·공유·연계·개방·유통·결합·활용 관련 각 부처별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16. 데이터 관련 민간부문의 의견·애로사항 청취, 필요한 개선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17. 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5조에 따라 4차 산업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안 제6조에 따라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